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되었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,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- 따라서, 예산 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현재 유예시점인 2014. 1. 1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함.
(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936호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 의결.(2013.9.25)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-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,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, 효율적인 운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, 현행대로 대행 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 - －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업무 ‘단서’ 및 부칙의 ‘경과조치’ 조항을 삭제

- 단서 : 다만,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.
- 경과조치 : 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 직영 전환시점(2014.1.1)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사업이, 예산절감효과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, 대행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,
- 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근로자의 낮은 임금부분은 장기과제 검토대상으로 여겨지며, 지금까지 대행사업을 운영한 결과로는 운영상의 부작용 사례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으나,
-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